



#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

구 분	
열람·서명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b>신종민</b>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 <b>정규진</b> 
확인자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장 <b>홍철삼</b>
작성자	현장대응단 지방소방경 <b>박경서</b>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8. 6. 7.(목)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06. 07.(목) 10:00 ~ 12:00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위원장
- ○○○ 교 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부위원장
- ○○○ 교 수(○○○○대 ○○○○대학원)
- ○○○ 변호사(○○○생명보험 주식회사 변호사)
- ○○○ 변호사(법률법인 ○○ 대표변호사)
- ○○○ 과 장(○○소방서 재난관리과장)
- ○○○ 단 장(○○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 배석자 >

- ▷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 ○○○
- ▷ (간사)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장 ○○○
- ▷ (서기)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담당 소방경 ○○○
- ▷ (배석)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담당 ○○○, 소방위 ○○○

### ◆ 진행순서

시 간 (180분)	내 용	비 고
09:50 ~ 10:00	10' 위원 등록	진행요원
10:00 ~ 10:05	05' 위원 인사	간 사
10:06 ~ 10:10	05' 개회선언 및 안건 소개	위 원 장
10:11 ~ 11:30	80' 안건 심의	위 원
10:31 ~ 11:40	10' 심의 결정	위 원 장
11:41 ~ 11:50	10' 폐회 선언	위 원 장
11:50 ~ 12:10	20' 간담회 장소 이동	진행요원
12:11 ~ 13:00	50' 식사 및 간담	참석자 전원

◆ 상정안건

-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및 자문
-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검토 및 자문 등

◆ 회의결과

- ▷ 소방관계자의 사실조사 및 일정금액이하 청구건에 대해 시도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소방기본법 손실보상과 관련된 소방청 훈령 또는 규칙 제정 시 적극적인 건의를 하기 바람
- ▷ 추후 관련 훈령 또는 규칙 제정 후, 관련 조례에 대한 재논의

□ 위원 발언 내용

◁간사 ○○○ 현장민원전담팀장

○ 참석 위원소개·경과보고 및 안건소개

바쁘신 가운데 심의회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심의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참석하신 위원분들을 소개 하겠습니다.(위원 개별 소개)

이에서 그 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2017년 12월 20일에 했었습니다. 참석위원이 7명 참석했구요. 그리고 안건은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지명, 그 다음에 이후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심의, 물적 손실보상 운영가이드라인 심의, 대시민 홍보 등을 위한 브로슈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그 간의 실적을 보면 저희가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 사항 및 위촉사항, 향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각 언론사 등에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을 보면 보상업무 전담 TF운영을 10월 19일 시작으로해서 2018년 1월 5일날 인원 2명을 보강하여 4명 체제로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주요업무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업무,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 및 지원보상업무, 위해물질로부터 노출된 소방공무원 긴급건강관리지원업무, 그리고 폭행 피해 소방대원 긴급 의료비 지원업무. 그리고 소방활동 방해사범 특별 사법업무,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처리 및 업무 지원, 그리고 소방관련 법률 자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총 12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손실보상은 34건 민간자원활용 2건 그 다음에 책임보험 1건, 위해물질 노출지원 15건, 소방차사고 14건, 소방활동방해사범 34건, 법률자문 3건 등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으로는 119대원 폭행피해를 발생시킨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해서 민사소송을 피해대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서울 창의상 최우수상을 저희 현장민원팀에서 수상하였습니다. 5월 30일자로 수상하였습니다.

제2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검토 및 자문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검토 및 자문 그리고 서울

특별시 손실보상 조례 시행규칙안 검토 및 자문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 등입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 위원장>

### ○ 개회선언 및 모두발언

작년 말에 뽑고 거의 한 6개월만에 뽑는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2차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검토 안건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 교수님들의 의견 잘 들어서 반응을 하겠습니다. 먼저, 1호안건 제 16쪽인데요.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후 부분은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 신설하고 소방관계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수행 등을 지원등을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2018년 6월 27일부터 이제 시행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이 곧 개정될 예정이므로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만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명부터 이제 보면은요, 제명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지금 보면 물적 손실뿐만 아니라, 전부 다 포함됐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폭을 좀 넓혔습니다. 나, 목적을 보면은요,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 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등 직무 집행중 발생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록 돼있구요. 다번을 보면은, 기록유지의 책임자를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변경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소방공무원의 사실 조사절차를 추가하게 돼있고. 라. 손실보상의 대상을 재난현장활동에서 적법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 소방중 사망령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등으로 확대하고. 마, 청구서 제출 기관 및 청구권의 소멸 시효들을 확대하여서 관할 소방서장 뿐만 아니라 소방재난본부장에게도 청구토록 할 수 있고,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청구권 소멸 시효를 확대하였으며, 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자격대상자 확대하여 시장이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칭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자격대상을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를 포함시키며 소방방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시키고, 사,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민형사상 책임관련 소송수행 시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아, 손실보상 사무처리시 주민등록 번호등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 ○ 간사에게 질문 : 조례개정을 위한 진행사항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간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① 지금 현재 이번에 지방 의회가 새로 지금 이제 개최하게 되면 그때 첫 안건으로 올리는 걸로 예정하고 계신 것인지?
- ② 서울시의회 의원 또는 전문의원들과는 협의가 된 것인지, 협의진행은 어디까지 된 것인지?
- ③ 담당 상임위원회는 어디인지?

## <간사 ○○○ 현장민원전담팀장>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된 서울시의회가 8월에 개최되면 그 때 상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의원님들과는 그분들이 선거관계로 바쁘셔서 아직 시의원님들과는 논의하지 못하였으며, 시의회 전문위원과는 초기 의견에 대한 논의중에 있으며, 담당 상임위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기본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그 기존에 우리 서울시 조례에 있던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겨있습니다. 일부만 시행령 내용이 지금, 일부만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이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전부 개정 여부 혹은 폐지 여부까지 말씀이십니까? 폐지라고 하면 새롭게 조례를 갖다가, 재정으로, 전부 개정하지 않고 아예 없는 상태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간사 ○○○ 현장민원전담팀장〉

그런데 일부, 시행 중에 보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피해액이 적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9건 정도 손실보상을 했는데요. 25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건당 25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손실보상 시행령에는 손실보상 위원회를 매 건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또 위원님들 바쁘신데 매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달마다 몰아서 하게 되면 또 행정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행령에서 정리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청에다가 일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건마다 전부 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지금 개정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 그러니까 시도 선에서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인데요. 또 시도 조례로 위임한 상황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세부내역은 정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마지막으로 개정안을 읽어보면 소방청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법제처에서 시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답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립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걸 개정해야 할 건지 폐지해야 할 건지에 대해 좀 논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개정 폐지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긴 한데, 저희가 그 지방자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실은 각 지방 의회라던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협력을 받기 위해서 그럴거거든요?

법률하고 시행령만 있어도 충분합니다만, 지금 조례로 있는 것들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시의회, 지방의회로 제정한다든지 개정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협력이 좀 강화되고, 또 각 시도

에서도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내가 만든, 우리가 만든 시행 목적을 정하고, 공포했다는 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 자체가 시행령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대동소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아예 없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이 각 지자체 아무래도 국가소방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 또 일정부분 지방정부화 되는 것에 발맞춘다고 할수 있어 일단 제 생각에는 그냥 일단은 유지 하기위해 제정안 자체의 개정 자체는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각 위원 안건 토의〉

(○○○ 위원)

법을 개정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정당한,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까지도 포함시키고 그리고 물적 손실이나 다른 부분까지도 포함시키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개정 이유인지요?

(간 사)

기존에는 우리가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나 또 예를 들어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보상할수 있는 조항이 소방기본법 제24조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서, 사문항 했던건데 이번에 그거를 손실보상을 인적손실보상, 물적손실보상 한꺼번에 몰아서 소방기본법 제49조에 넣어 놓고서 시행령에다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적 사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례에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담으려면 그 전에 물적손실보상 조례에서 아예 명칭까지 그냥 손실보상으로, 명칭까지 개정을 하면서 내용을 많이 개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전부 개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시행령에 서울 조례를 그대로 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 맞추어 비슷한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시행령으로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 저희들끼리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위원님들의 검토 및 자문을 받고자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개정 법률하고 개정될 시행령만 있으면 조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를 싹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간 사)**

그래서 지금 조례도, 이거를 우리가 뭐를 집행 규정을 뭐를 하려고 했더니, 그 운영에 관한 그 조례 위임상황이 없습니다. 시행령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게 없고, 소방청장이 정한다고 그냥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OOO 위원)**

소방청장이 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이죠. 현재 법령 개정안에서? 법령에 대한 애김니까? 시행령에 대한 애김니까?

**(간 사)**

소방기본법 시행령입니다.

**(OOO 위원)**

시행령이라면.... 몇 쪽입니까?

**(간 사)**

시행령에 그 논의가 되는것이 두 가지입니다. 손실보상과 관련 세부사항에 기준이나 지급 결정하는 데서 필요한 사항이나,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 두 가지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페이지가, 65페이지 마지막 6항을 보시면, 손실보상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65페이지 맨 마지막을 보시면. 그리고 68쪽 제18조의 10 보상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방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알기로는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소방청 얘기했더니 보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에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앞에 65쪽에 있는 손실보상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OOO 위원)**

지금 소방청에 아무리 지금 새정을 했어도 시도별로 상황도 다르고 소방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령이 있다고 해서 시도조례로 정하지를 못한다는 건 시도에 맞는 특성도 있을텐데 거기에 맞게 시도조례를 조정할 수 있는게 맞다. 아예 없다고 하면 그게 필요할 때 시행령을 시도조례를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고

불법적이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 사)**

처음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두 번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내려올때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라고, 두 번째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 소방청장이 정한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삼차 개정안이 내려올 때는 이제 보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OOO 위원장)**

일단은 지방자치법상 조례에 관해서, 저도 지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같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방자치법상 조례를 보면은, 22쪽에 나와있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는게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신장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그 시행령에 있는 내용과는 별개로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오히려 주민들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법 해석상에 어떤 법률의 위임이나 뭔가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OOO 위원)**

소방청장이 정한다고 돼있는데, 소방청은 국가기관 있잖아요. 국가기관이 정하는 이 시행령 개정안은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간 사)**

소방청에서 내려온 겁니다.

**(OOO 위원)**

소방청에서.. 여기 손실보상의 청구 및 관련 지급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해서 국가가 통일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의도입니까?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의도는, 손실보상에 관한 것은 시도별로 어떤 차이나 차별을 두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어떤 경우에 어떤 식의 어떤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게

권리 제한 사항은 아닐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보면 어떤 경우에 손실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손실 보상을 어떤 경우에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느냐하는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권리의무와 밀접한 사항이죠.

손실보상 청구권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법규를 정하는게 맞긴 한데요. 소방청장이 정한다고 해 놓은 것은 소방청장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권 한은 없어요. 정하면은 뭐 고시나 훈령같은 방법으로 정할 수 밖에 없고, 그거는 이른 바 우리 행정법에서 말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법적 효력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지금 판례나 학설에 의하면은요. 다만 소방청장이 정한다는 입법 의도가 분명히 국가적으로 손실보상에 관해서 통일적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의도가 조금 보인다는 말이죠. 그럴 때 이걸 조례로 별도로 정했을 때, 만약에 내용이 다르면 기준이나 내용이 다르면, 이게 충돌이 되거나 혹은 중복이 되거나 마찰 소재가 생겨서, 뭔가 좀 국가와 시도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시행령에서 시행령이 이런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이 이것을 그냥 소방청장을 통해서 손실보상에 대해 국가 통일적으로 정하겠다. 이런 의도가 명확하다면 시도단위에서 이걸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없거나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시행령 개정안은 안이니까,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관찰시키려고 하는 건지 소방청에서, 아니면 그냥 한번 예시로 내놓은 건지. 아직은 뭐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 사)**

시행이 6월 27일날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6월 27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개정하기가 시간적인 여유나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OOO 위원)**

시간적인 것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이 사안의 성질상 손실 보상에 관한 여러 가지 비준 방법, 절차, 내용 이거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정해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 다르고 경기 다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지역적으로 혼선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간 사)**

지금 손실보상에 대한 조례가 있는 시도가 6개 시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없구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안

이라고 작성한 이름은 그 소방기본법에 관한 손실보상 내용과 시행령에 있는 사항 거의 그대로 담았고, 약간 시민들에게 비례보상 부분은 약간 빼고 정리를 했습니다.

**(OOO 위원)**

시행령에 손실보상의 기준이라든가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령만 가지고 부족하거나 서울시에서 특별히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간 사)**

예,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손실보상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손실보상은 소방과 관련된 것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원래 조례안에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OOO 위원)**

시행령에 각 시도별 모든걸 시행령에 다 넣을 수 있다면야 각 시도에서 조례가 필요없지요. 그런데 시행령에 과연 그걸 담을 수 있느냐 물어볼 때 없다고 하지, 그 많은거를, 그럴 때는 각 시도 특성에 맞게 시도별로 위임해주는 것도 좋은 거지요.

**(간 사)**

복안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적이 이제 국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OOO 위원)**

소방공무원이 내년에는 다 국가직으로 되면서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건 아닙니까?

**(간 사)**

그런 것도 조금 연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기본적인 손실보상 내역을 조사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있어요. 빠져있고, 또 만약에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처분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요. 시행령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조례에서는 사실조사 관련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계속 나가

다 보니까 사실조사가 없으면 시민들이 보상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관련자료를 볼수가 없거든요. 피해조사를 하고, 저희가 피해자 면담 그런걸 통해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조사 내용이 원래 조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저희가 나가서 그랬던게 뭐냐면 보상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즉 200만원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5만원, 10만원 그런 경우도 있고요, 3만원짜리도 있고. 그런걸 가지고 조그마한 건을 가지고 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이 한 번은 아까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외제차 렌탈을 하게 되면 1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손실보상으로 처리하려고 했더니 피해입은 시민이 그걸 못견디더라, 그 기간을. 그래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그거를 돈 지급하기까지는 빨라야 한 달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못 기다리시고 내가 이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니 시민분들이 거의 못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가 생기면 정기적으로 하긴 해야되는데, 이게 바쁘면, 200만원 이하라는 얘기가 시행령에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걸 우리가 이제 조례에서 담을 수가 있느냐. 기존에 조례에 200만원 이하 손실보상위원회의 결정 없이 우리가 정한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200만원 이하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해 왔는데 그렇게 조례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 시민의 권리제한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반하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판단을 저희가 요청하고 싶습니다.

**(OOO 위원)**

시행령에서는 모든 보상청구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제외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는데.

법령에 없을 때는 조례에서 정하면서 일부 예외를 두는 것도 가능한데 법령에서 이미 그 절차를 확정해 버렸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법령에서 뭐, 좀 아쉬운거는 65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래봤는데 사실 위원회는 소방청에도 있을 수 있고 각 시도 단위에도 있기 때문에 정한다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소방청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던가 뭔가 이런 좀 뒤에, 위원회 관련해서도 뭐 보상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랬는데 시도도 손실보상위원회는 다 있는데 각 시도별로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장이 일일이 정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런것도 소방청장이 정하거나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좀 손실보상에 관한거나 위원회에 관한거나 각각 조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시도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좀 들어갔으면 딱 좋았겠지 싶거든요.

**(OOO 위원)**

특히 지금 좀 이 부분이 소방청장 등이 정한다고 했다가 다시 소방청장으로 정한다 그 이 부분은 사실 되게 논의가 있었고, 중요한 쟁점이 됐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이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이게 먼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OOO 위원)**

이걸 소방청장이 정한다를 소방청장 등이 정한다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간 사)**

원래 첫 번째 시행령 안에는 등으로 나왔었거든요. 왜 이게 오타난거나 했더니 오타난게 아니라 법제처에서 건의를 한거라고, 국가 전체의 소방이 그거는 똑같이 가야지 혼선이 생기면 안된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OOO 위원)**

그럼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고시나 훈령으로 정하는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인거죠.

**(OOO 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소방체제가 지방광역체제인데, 국가사무로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과 같이 하더라도 국가사무로 했을 때 과연 경찰을 예로 들면 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거의.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로 정하여야 되는냐를 논의할 의미 자체가 없고 말이 안되는 거예요.

**(OOO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논의하는 것이지요.

(OOO 위원)

내년에 소방관들이 국가적으로 간다면 오늘 논의가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OOO 위원)

지금 이 논의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간 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저번에도 담을 수 있는게 없어요. 조례를 존치를 해야 되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이죠.

(OOO 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직이 이제 된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 발생할, 앞으로 6월 28일날 시행이 되면 위원들이 공백이 생길 여지가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존치하고 이행하자 하는 것까지 논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안 된다고 하면은 말이죠.

(OOO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당장에 조례를 폐지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게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시행령에 따라서 다시 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에 만들어 놓은 조례를 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의는 필요하지만 위원회를 매번마다 개최해야하느냐 마냐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지만 일단 뭐 이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더 구체화 되기 전까지는 우리 소방 국가사무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까지 존치를 해놔야 뭔가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OOO 위원)

법령이 이게 공포가, 시행되고 나면 기존 조례하고 접촉성이 생길 수 있거나, 그런 얘기죠? 조례 자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될 수 있는 건데요?

(OOO 위원)

네.

(OOO 위원)

손실보상에 관련된 것은 소방청장이 정한다는 것도 소방청에서는 이미 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요? 네? 기본 법령 개정이 시행이 되면 아마 그대로 바로 시

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간 사)

시행령이 시행일이 이제 3주정도 남았는데 그날로 바로 시행됩니다.

(OOO 위원)

바로 시행되면, 시행될라면 이 손실보상에 관한 소방청장의 훈령이든 무엇이든 바로 고시가 되어야 적용 집행이 가능할 건데요.

(간 사)

시행령 안을 6월 4일까지 의견을 제시해라 문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4일까지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담당자 의견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27일날 시행일 하게 되면 지금 법제처에다 검토회의를 넣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시도에서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세부 훈령같은 것은 아직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급한게 뭐냐하면 이대로 가자면 매번 의원님들 방화문 하나 파괴한 것, 방화문 파괴도 아니고 시건장치 하나, 5만원짜리 시건장치 하나 손실을 입힌 것, 이런 것까지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OOO 위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혹시 의견을 제시 했는데도 무시된 겁니까?

(간 사)

네. 그래서 200만원 이하를 고수하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문서를 심도있게 검토하라고 보낸게 아니고, 문서만 보내고 이미 늦어서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OOO 위원)

소방청에서는 그동안의 관례, 실무를 다 알 것 아닙니까?

(간 사)

지금 서울을 제외하고 그 다음 부산이 시행됐는데 건수 자체가 서울처럼 많지 않아서 한 두건 발생할까 말까해서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OO 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잘 하고 있는데, 서울이라도 좀 힘이 들더라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간 사)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시민이 청구하면 보상해주는 방식.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은 그런 것 자체가 민원이다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거기에 직접활동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간에 개입을 해서 사실조사를 통해 저희가 직접 보상을 하는 것이 서울의 개념인데 전국적인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청구가 그런 청구가 들어오면 그 청구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주면 되는데, 거의 청구만 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간 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민들이요, 신속한 집행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오늘 새벽에 문개방을 해서 보니까 내부에 사람도 없고 불도 안 났어, 그러면 당장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열쇠집에 우리가 바로 열쇠집에 연락을 해서 문도 고치는 것까지 보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로 가지고 와서 업자한테 지급을 하면 되는데, 하루 이틀만 늦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 열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기존보다 더 퇴보하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든 이거는 개선해야 되는데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OOO 위원)

지금 서울처럼 청구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지금 현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판단을 가지고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지급을 한다. 이런 방식이 저촉되는 건가요?

(간 사)

첫 번째는 뭐냐하면,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청구해도 안됩니다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헌법에 있는 청

구권을 우리가 막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많이 들었어요. 청구는 하시는데 우리가 이거는 청구권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안된다.

(OOO 위원)

두 유형으로 나뉘어가지고, 청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좀 손실 끼치게 있어. 그러면 인재 지급을 해요.. 그 다음 우리 위원회가 가동될 여지도 없잖아요. 두 번째, 청구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안 됐더라도, 개최 하는 거죠.

(간 사)

그러니까 각하나 기각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명백하게 우리가 불법행위가 없고, 직무에 맞게 정당하게 소방활동을 했는데, 내집에 불이 나서 불 꺼졌어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수손피해가 발생한 수손피해에 대해 소방관들한테 물어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화재 진압활동으로 인해서 수손피해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간 사)

실무적으로 청구권 접수 자체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실무적으로는 접수 자체를 안 받는 방향으로도 안내를 했었는데 조례의 절차로 봤을 때는 그럴 권한이 없어, 일단 접수를 한 뒤에 각하를 하든 기각을 해야 때문에 향후의 모든 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OOO 위원장)

일단은 논의를 한 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실은 조례의 큰 틀에서 보면은 뭐냐면, 조례를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부터 해가지고서, 그거는 아마 국가직 시행과 아직 그 지금도 뉴스를 잠깐 봤더니마는, 현재 정부에서 그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국가직 전환에 필요하다 하긴 했지만 또 지방자치제 도라든지 헌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약간 유무의미로 나뉘어서 정확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과연 조례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법령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고요. ○○○ 교수님이라든지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방청장이 이거를 국가적으로 일원화시키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안건이 제가 다시 한 번 봤는데 오늘은 이제 조례안의 개정 이유, 개정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개정하지 않고 폐지해도 우리가 괜찮은 것인가 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간사님께서 어디까지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건지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겠어요?

**(간 사)**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게 이제 그 위원회 개최건인데요 지금 27일 지나면 이제 건건마다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행정력 낭비에다가 그 행정에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7일부터는 조례에다가 200만원 이하를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시행령에 따르면...

**(○○○ 위원)**

손실보상에 대해서 의견을 냈지만 그 부분이 거절당했다면 그 지금으로써는 정말 그런 상황이 어려운부분이것 간섭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이 손실보상금에 대한 심의와 결정하는 시한은 없는 것 같아요. 시행령에는.

**(간 사)** 60일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네. 60일 내에 라는 게 있고. 그 다음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법률 공백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정기적으로 해서 몰아서 안건을 시행해서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뭐 한 달이건 며칠이건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것들이 가장 지금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 사)**

거기에다가 저희는 가장 문제가 되는게 문개방이예요. 화재가 나면 전 층을 검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문을 다 강제개방해여 하거든요. 그리고 보니 보안문제가 뒤따라요. 이게 왜냐하면 잠시라도 이거를 빨리 해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도난이나 절도니 이런 보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얘기하기 전에 저희는 벌써 딱 들으면 알아요. 아 이거는 시건장치 강제개방이 있었었구나. 그러면 벌써 현장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 때문에 경찰도 그것 때문에 머리 엄청 아파해요. 왜냐면 우리가 119가 하는 거 우리가 처리하지만 그 112가 강제개방하고 이런 걸 담당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걸 방법이 없어가지고, 거기도 위원회를 몰아서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신속하게 보상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례로 이렇게 재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방이 훨씬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기들도 모방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시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죠. 또 만에하나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 위원)**

그러면 인명피해나 그런 그 독특한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간 사)**

다 똑같죠. 저희는 다 긴급한 거거든요. 현장에서 일단 손실이 발생하는 건 대부분 다 급한 상황이지요...

**(간 사)**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처리를 해주고 후에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위원회 심의결정에 과하면 반납하고 부족하면 더해주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 위원)**

근데 그렇다고, 긴급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조례로

해서 그걸 제안하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울 거 같다고 생각되어지고 112 그쪽이랑 비슷하게 몰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수 밖에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OOO 위원)

상반기 동안에 손실보상이 34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200만원을 넘지 않은 것 같은데 대부분이 어느 정도인가요?

(간 사)

평균 25만원 정도이고 총 9건 정도에 왜냐면, 34건 중예요, 보험에 해당되는 보험처리한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외제차같은 경우 천오백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구조구급책임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왜냐면 그 분이 얼마나 격한지요, 하루에 전화를 우리 박경서 팀장님한테 전화했는데 34통 했나?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위원회 개최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구조구급책임보험으로 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보험사에서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 사)

손실보상하고 손해배상하고 분리는 돼있지만, 경계선상에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손실보상 처리하려면 한 달을 못기다리는 시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OOO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을 소방청에다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시행령안이 나오기 전에 그것이 다 반영되도록 했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간 사)

애초에 시행령 만들기 전에요, 우리 조례를 갖고 갔습니다. 우리 조례를 갖고 시행령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도 우리 의견이 많은 부분이 빠진 거죠.

또 제가 볼 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오는 사항을 많이 참조한 것 같습니다.

(OOO 위원)

그러니까 항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소방청에 찾아가서 지금 현장 실무도 모르고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항의를 했으면... 시민들 위해서나 모두를 위해서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 사)

이 사항을 갖고 위원장님을 한번 찾아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위원장님께서 이제 령이 나와봐야 알겠는데, 하여튼 원 령 나오는거 보고 하자.

(OOO 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 열어서 하여튼 위원회에서 심의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정하겠다는 거고.

(OOO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심의위원회 결국에는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소방청장님이 이거를 금액을 결정을 하고 하는건데요.

(OOO 위원) 그것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입니다.

(OOO 위원) 기준만 이제 따로 소방청에서 정하겠죠.

(OOO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면 안돼요? 그러면은 조례 이런게 아니라 우리는 예를 들어서 50만원 미만 이런 정도까지는 국민들의 어떤 빠른 손실보상 처리를 위해서 이 부분은 위임을 하겠다는 거를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떨지요..

(OOO 위원장) 전걸 형식으로 말씀이지요?

(OOO 위원)

예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내부적으로 했더니 이거는 우리가 처리를 못하겠다 하는 것은 다시 심의위원회를 오더라도 일단 지급처리를 할 건에 대해서는....

(OOO 위원) 위원회가 그럴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OOO 위원) 없을까요?

(OOO 위원) 위원회는 심의 청구됐을 때 보상 요구나 보상 금액 정하라고 해봤는데...

(OOO 위원) 근데 거절, 아니 그게 금지되는 것도 아닌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OOO 위원)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OOO 위원) 그 심의는 위임을 하는게, 금지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OOO 위원)

전결이나 권한 위임을 하려면 별도의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위원회의 단순한 결정으로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위원회가 무슨 여기서 내부의 규정 권한, 규정 결정 권한이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일반위임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안 될 거예요. 개별 사건에 대한 심의 권한 외에는 없거든요. 원래 또 심의, 위원회가 심의기관인데 심의 기관은 원래 최종 확정적인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일단 심의를 해도 보상 주체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틀어버릴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너무 적게 보상 심의가 나왔다거나 할 때에, 증액을 시도지사가 못 할 것도 아니거든요. 심의 권한에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간 사)

저번에 2차 회의 때 저희가 손실 보상 운영 위원회 규정을 심의 했잖습니까. 거기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심의 금액이 작아서, 과다해서 그거를 이제 뭐 다 시하라고 재심의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다른 데에 뭐 법률에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요. 그런 200만원 이하가 그러면 법에는 없다면 조례에서는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OOO 위원) 건마다 개최를 해야될 것 같네요. 모아서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OOO 위원) 지금 서울시만 좀 예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나머지 시도는 이렇게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간 사)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다른 시도를 방문하거나 해봤을 때, 다른 시도는 손실 청구 즉 손실 보상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보면, 법률 문구상으로만 보면,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봤을 때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소방대상물이 어떤 거냐 하는 특정을 해야 되는데, 소방기본법 나와있는 소방대상물은 하

나의 건축물이라고 보면 아파트 한 동이 있잖습니까? 그 동 내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다든지 하는 것을 손실보상을 해줄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좀 더 거기에 대해 풀어서 1층에 화재가 났는데 2층 3층 4층 피해가 발생했으면 소방관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소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소방공무원들 인명구조활동 열심히 하게 하여야겠다, 그렇게 안되면 구조대 인명구조 건건마다 그 자체가 손실보상 건이 아니거든요.

(OOO 위원)

기존 조례에 의한 보상은 물적 손실에 의한 데에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개정 법령에서는 인명에 관한 것이 다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사망한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부상당했을 때 치료비나 이런 어떤 비용을 보상할 때 그 보상 금액이 200만원 이하다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확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지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서 추가 비용이 들지 어떨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위원회 정도 차원에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닌지. 보상의 대상이나 내용이 지금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간 사)

그 인적피해가 들어간 것들이 뭐냐면요.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소방중사 명령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부상과 사망에 이른경우에 보상하는 규정인데,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간 사) 그리고 기존에 의사상에 관한 법률 1부터 9까지 돼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심의를 하고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 사)

의사상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그것과 관련되어 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 치료비를 보상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은 저희가 중사명령을한 게 아니예요. 자발적으로 먼저 참여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도 포함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라든지 보상이 가능한데, 지금 이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보면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OOO 위원)

안 된다는게 아니고 법령에서는 이 만큼만 국한해 놔고, 나머지 또 추가적인 거는 조례로 하면 되지요. 그 때는 그 조례는 폐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은 보완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조례로 보상을 하고 하면 되지요.

(간 사)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몇 번 했었어요. 그 관련된 법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의 보상되는 경우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거의 중상자가 돼야 보상을 받는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OOO 위원)

그런데 중상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상의 정도가 중상에 국한될 건 아니잖아요.

(간 사)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9호에 보면 타박상이나 찰과상도 있습니다. 찰과상의 경우에도 보상해주도록 의사상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담당자분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중사상자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간 사)

보건복지부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는데 거의 중상이나 사망 아니면 선정이 안된다고 그 담당자가 얘기를, 그래서 서울시 민간자원활용에 관한 조례, 그걸로 저희는 보상한 건이 몇 건이 있어요. 그리고 의사상자로 해서 우리가 했는데,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OOO 위원)

근데 종사 명령에 의해서 부상이 일어났고 부상의 정도가 경상부터 중상까지 다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전자가 충족된다면 부상의 정도는 여기 법령에 의해서 포함되면은 보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새로운 법령에는.

(간 사) 종사 명령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OOO 위원)

종사 명령에 의해서 만약에 소방활동에 같이 협력을 한다면 뭐 죽든 중상을 입었던 경상을 입었던 간에 이 시행령에 손실 보상 기준이 73페이지 보면은 나오잖아요? 여기 해당하면 금액이 얼마든간에 보상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중상은 되고 나머지는 안된다. 그런 기준은 없는 거 같은데...

(간 사)

예 그래서 그 기준 자체는 그 뒤에 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상자 법령의 기준과 똑같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해서 보통 사망자가 2억 3천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1호부터 9호까지 부상자들은 보호등급 산정을 받아도 한 천오백만원 정도 보상을 받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 면제되구요.

(OOO 위원장)

지금 한 시간 정도 경과됐어요. 1안에 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나눠 보구요, 1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OOO 위원) 내년 1월1일자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되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OOO 위원장) 아, 현재 의견은 소방청에 나와 있으니까요.

(OOO 위원)

예. 왜 그러냐하면 소방기본법시행령 이게 6월 27일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그래도 올해 말까지는 서울시소속이니까 그 사이에 뭐 소방청에서 고시나 훈련으로 보안을 할 것 같아요. 올해까지만 이라도 조례에 의하는 것이 관할을 것 같습니다.

(OOO 위원)

시행령은 이제 법적 개정 절차나 공고 입법예고 이런걸 다 되어서 시간상 어렵다는 건데 소방청장이 정하는 부분은 그것은 법규적 효력은 판례나 학설상 인정되지만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대상에서 공포대상으로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포 없이도 바로 시행 가능할 겁니다. 절차를 밟지 않고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거기다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용에, 소방청장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

하고 필요한 경우에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규칙을 정할 수 있다던가, 조례로 하기가 뭣하면, 소방청장이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조례에 대한 위임은 법률이나 적어도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 정도여야 될 것 같은데. 소방청장이 훈령 정하면서 시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라는 건 좀 이상하고. 다만, 시도에 규칙으로 정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시도지사가 약간의 예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도지사 규칙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약식절차, 긴급 사항에 대한 약식절차 이런 걸 정해서 운영가능한지 소방청과 한 번 협의 해보는게 어떨습니까? 시행령은 좀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OOO 위원)**

소방청에서 이 법을 만들 때도 소방청 예산을 쓰겠다는 건지, 그것조차도 시도의 예산을 쓰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시도 예산을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도 예산을 쓰려면 소방청에서도 시도에서 할수 있는 여지라도 좀 해줘야지, 그건 안해놓고 시도예산을 쓰라는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간 사)**

저도 그 얘기를 해보니까, 왜냐면 인적 피해가 발생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상자 선정을 할 때 구청에서 신청을 받고 시도에서 취합만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방청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의견낸거는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어차피 의사상자 그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과 같이 소방청에서 심의를 해라, 그래서 똑같은 잣대로 시도를 심의를 해가지고 정부예산으로 지금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하지 못하겠다, 일은 시도에서 하고, 돈도 시도에서 내고 자기들은 취합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OOO 위원)**

내년에 당장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소방관들은 국가직이 되고 국가 공무원인데 현장에서 잘못이 있으면 보상은 시도에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OOO 위원)**

지방에 있는 소방재난본부가 전부 국가기관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도 국가 공무원이 되는 거지요. 그럼 소방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가 되는 것이네요.

**(간 사)** 서울지방소방청이 되는겁니다.

**(OOO 위원)** 신분은 국가 공무원이 돼요?

**(간 사)** 신분만 국가 공무원입니다.

**(OOO 위원)** 사무가 국가사무가 되는건 아니죠?

**(간 사)** 네.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으로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1월 1일자로 말이죠.

**(OOO 위원)**

국가기관의 국가공무원이 시도의 자치사무를 일종의 위탁처리하는 그런, 신분과 기관관리는 국가적으로 하고, 사무는 시도차원에서 하면, 인사권은 국가에 있는데 사무지휘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완전히 이원화 되는 거네요.

**(간 사)** 인사권도 시도지사한테 있습니다.

**(OOO 위원)** 인사권까지요?

**(간 사)** 예.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OOO 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은 사무는 자치사운데, 국가공무원에게 위탁하는 거고, 국가기관에게. 사무를 결국은 시도 자치사무를 국가기관에게 위탁하는 형식이 되니까. 그 처리비용이나 이런 건 시도가 부담하는 게 맞죠. 손실보상도 시도가 각자 부담하는게 맞고 소방공무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거에 대해선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으로 국가직 되다보니까 엄청 혼선이 오는거 같아요. 소방청에서 지금. 국가직이 되더라도 어차피 사무가 자치사무고 하면, 지금하고 실무적인 차이는 별로 없잖아요. 일하는 데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역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년 이후에도 약식 절차화 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OOO 위원)** 소방청에 법률 담당 직원이 구체적으로 잘 업무를 꿰뚫지 못하는 것 같아요.

**(OOO 위원)**

담당 직원을 서울 본부에 한번 초청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 상황을 그동안에 업무진행 상황을 전부 다 브리핑을 하고 여기 시행령이 어렵다면 소방청장 훈령이라도 뭔가 반영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시행령이라는 건 그래도 국회 의견이 반영된 것이니까 일단 이렇게 돼서 통과하더라도 다음에 또 시행령은 대통령이 또 개정하면 되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하니까 개정할 수 있는거죠. 그렇게 라도 해서 사후보완을 좀 시도해 보든가. 당장 지금으로서는 조금 마땅치 않은 듯 합니다.

**(OOO 위원)** 지금으로서는 진짜 몰아서 정기적으로 심의를 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OOO 위원)**

일단 법령에서는 분명히 모든 보상 상황에 대한 이게 왜냐하면 보상 요구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보상이 되는 사항이라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30만원, 50만원 평가해서 보상 지급 결정을 긴급하게 하면 되는데 이 법령에서는 보니까 인명에 대한 거 전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이게 보상 대상이 되느냐, 보상을 할거냐, 한다면 얼마를 할거냐, 기존에 먼저 이거를 일단 위원회에서 먼저 전권사항으로 법령에 정해놔 버리니까 이걸 스스로 예외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회의 심의 없이 단순 약식 절차로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아마 그 뭐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다.

**(OOO 위원장)**

64쪽에 보시면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자면 처음에 시행령이의 문제를 논하고 나서 18쪽에 3, 제3항을 보면요, 심의회를 거쳐서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친다는 게 지금 내용을 보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물리적으로 해석한다고 본다면 3항 보면 소방청장 등은, 소방청장 등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청장이 아마 각 급 소방...

**(OOO 위원)** 여기 참 시도지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1항에 나오는데요.

**(OOO 위원장)**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 심의를 거쳐서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돼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심의가, 처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심의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사후도 가능한 건지 여부를 좀 고려하긴 했는데 18조에 4, 66쪽에 있는 거라든지 또 다른 67쪽에 있는 18조의 6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를 이제 심의에 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기에 제한이 없고 그러면 18조의 3 제 3항을 보면 그냥 심의를 거친다고 돼 있으면, 물리적 해석을 따르면 사전 심의가 맞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사후에 한다든지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뭐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그와 같은 해석이 그 시행령에 위반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건바이건으로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도 솔직히 위원장이지만 위원회 일원으로서 상당한 두려움에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OOO 위원)**

그런데 지금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돌아가지고 하는 그 기간 내라면 하나 있다고 해서 바로 열어야 되고 그런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장)**

그런 건 아니죠. 네. 사실조사도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민원인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가 계속 저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OOO 위원)**

그런 건 이제 사실적인 문제고 사실은 이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는 기준일을 6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것 때문에 이걸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장)**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OOO 위원)**

그런데 이게 급해서 빨리 고쳐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소소,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하고 원래 어차피 모든 소방 이런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든 뭘 하든 그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와 시간이 다 필요한 것인데 이거에 한해서만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걸 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게 다 급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고 하는건 모든 사람이 똑같지만.

#### (간 사)

저희도 그렇게 할려면 하는데 저번에 돈의동에 쪽방 그쪽에 불이 나 가지고, 불이 번지지 않은 집을 소방 관계자가 개방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전화가와 가지고, 하루에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직접 찾아 뵙고, 열쇠 불러다가 수리해 주고 왔더니 열쇠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이 찌그러졌으니까 찌그러진 그것도 보상하라 이거예요. 제 현찰 5만원 주고 왔어요. 그걸 안하면 좀로 소방서장, 서울시, 강원도지사까지 전화가 와요.

#### (OOO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법률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거죠. 그런 과정들 없이는, 귀찮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간 사)

그런데 저희 본부장님께서 추구 하시는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빨리 빨리 처리하고 직원들이 일하게끔해라, 왜냐하면 직원들이 시달려 갖고 일을 못해요. 우리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현장 직원들이 좋아하는데요. 그 전에는요, 이런 건 하나 시건장치 개방, 문을 일부러 직원들이 안 따요. 거기 사람 있어도 물어줄 생각에 더 안 따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 (OOO 위원)

위원님들 다 말씀들이 들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법령 개정을 이렇게 내 놓으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애요. 이 개정안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냐 이걸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의 성질상으로는 우리 200만원으로 정한, 그것도 크면 뭐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금액을 줄여서라도, 아까 평균 25만원이라고 하니가는, 100만원까지는 다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있는 여지를 이 법령에다가 혹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훈령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입법적 대응 하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가 안 해줄 수도 있고, 뭐 현장에서 애로는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청을 했을 때. 첫 번째 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국가 입법의사가 분명하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법령 대로 집행하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법령 안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개최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떻게, 예컨대 60일 안에 위원회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한 달 반 혹은 두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때까지 청구된 걸 모아서 모아서 약식 심의를 하든가. 이렇게 당분간 대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국가적 전환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시행령이라든가 청장 훈령 개정 등을 서울에서 계속 주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선 이런 게 있는데 대구나 부산 인천 이런 데서는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면 조금 납득이 안되거든요? 건수가 적을 수는 있지만 대도시에 이런 밀집한 상황에서 서울시에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신 셈이고 그 쪽에서는 아마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안 해서 건수가 없던 거지 일 자체가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서울에서 모범적으로 해 온 건데, 상도 받고, 이걸 법령에 의해서 못하게 해 놓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위원회가 안 열리더라도 분명히 사실관계 조사라든가 이쪽 것들을 합쳐서, 본부 안에 책임 하에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민원인이 이의 제기하면 언제든지 이의에 불복해서 이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 제기 청구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예컨대 경미한 사항이라고 직접 했더니 30만원이라고 너무 적다고 뭐라고 하고 50만원에서 1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의 제기심의 주는 거예요. 그 때는 위원회에서 정식 심의 하겠습니다.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간 사) 시행령 개정된 안에 이의신청 같은 게 있습니다.

#### (OOO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경미 사항에 대한 예외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둔다면 그거에 대한 다시 예외로서 어떻게 서비스한다고 하지만 저쪽 의사와 다르게 결정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은 3천만원인데 1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경우에는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일종의 재심의,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법령에는 넣는 거예요. 시행령이나 워 훈령에다가 넣어 놓으면 보완이 될 것 같기도 하구요.

(OOO 위원)

말씀해 주신 거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하나는 당장에 지금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건바이건이든, 건마다 결정을 해야 되고, 모아서 하든 뭐하든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것은 이 심의위원회를 서면이나 이런 걸로 할 수는 없는 건지. 꼭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건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워 했는데 결국 7만 얼마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다 모이는, 그런 것 때문에 다들 우려를 하시는 거여서. 이 심의위원회가 꼭 현장 개최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메일이나 이런걸로 서면 개최를 하거나 아니면 뭐하면 유선으로 전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여지 등 가능성을 있는것인지...

(OOO 위원) 회의가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네요.

(간 사) 소집이라고 돼 있습니다.

(OOO 위원) 소집이라고 아예, 소집이라고 되어있고.

(OOO 위원) 유선은 안되나요? 원래는 이사회나 이런거 다 전화로 해서, 다 가능한데.

(OOO 위원장) 영상회의라도 가능한 한데,

(OOO 위원)

그런 것들도 소방청장이 필요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에서, 소방청장이 정할 수도 있는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서면회의 와서 하면 출석한걸로 간주해버리고, 다만 지금 그런게 법령안에서 전혀 근거 없이, 지금은 출석회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냥 해버리면 이게 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OOO 위원) 분명히 있죠.

(간 사) 그러면 만약에 소방청장 등으로만 되면, 저희가 시도지사가 정해도 되는 건지요?

(OOO 위원)

소방청장 등이 정한다고 하는 것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는 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도지사가 정한다 하면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죠.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규칙 정도. 서울시장 규칙.

소방청장이 정하는게 좋죠. 소방청장이 그 워 18조의 3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피해 사실 내지 피해액의 규모가 명확한 경우에, 금액의 규모가 경미한 경우에는 약식 절차를 거칠 수 있다든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부장의 결정으로 보상할 수 있다든가 워 이런 식으로 살짝 하나 넣어주면, 그러면 다시 조례를 거칠 필요없이 소방청의 훈령으로 바로 집행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간 사)

그러면 훈령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말씀하신 내용을 넣든 안 넣든, 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자체적으로 200만원 이하를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지요.

(OOO 위원)

이 법령이,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현재로서는 좀 존재시키기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여기 법령에 다 흡수돼버리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간 사)

훈령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200만원 이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고, 훈령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테고 말입니다.

(OOO 위원) 일단 여기서 200만원 미만을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간 사) 삭제하면 나머지는 어차피 겹치니까, 이의제기 절차가...

(OOO 위원)

제가 볼 때는 소방청장과 서울 본부쪽에서 협의를 좀 하셔서, 청장이 정하는 훈령이나 고시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약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든 잡아 넣는게, 그러면 조례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걸로 바로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200만원이, 그동안 서울시에선 2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평균 건당 25만원이라고 하니까 부담을 최소화 해주기 위해서 100만원이나 50만원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상한을. 그래도 실제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소방청장 입장에서 볼때 건당 50만원짜리 워 그나마도 실제 운영상

으로는 25만원인데 그것때문에 위원회가 매번 열리고, 이거는 정말 행정력 낭비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거를,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건데, 그런거는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OOO 위원) 그러면 간이절차로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유리하게,

(OOO 위원)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행정편의 뿐 아니라, 행정편의를 강조하기 보다는 신속한 어떤 구제,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경미한 건이 다수고 피해사실이 확실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본부장의 결정으로 보상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다만 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된 건에 대해서 심의 없이 불복할 때,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그 경우에는 손실보상위원회에 정식 회부해서, 여기서 재심의 하는 거죠. 본부장님은 예컨대 20만원짜리로 결정했는데, 여기서 해보니까 한 30만원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 그러면 그사람이 30만원을 요청하면 30만원 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절차적으로 시간이 약간 걸려서 그렇지 자기도 손해는 없잖아요? 손실보상 청구권 자체를 침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소방청장이 좀 정하게 하면 안 돼요?

(간 사)

전국에 약 19개의 시도본부가 있고, 대부분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본법이나 시행령 갖고 진행을 할 건데, 말씀하신대로 대 국민의 권리나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200만원 이하를 자체처리한다라는 규정을 우리 서울시 조례에만 넣어서 우리만 할 게 아니고 법이라던지 소방청장의 훈령에 넣어가지고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OOO 위원)

우리가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이거는 조례에 넣어서 서울만 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소방청의 행정 및 국민들의 뭐 어떤 호평받는데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소방청장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하신 긴급 필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막 끈질긴 요청 이런 사례를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례를 다 붙여 넣어서 실제로 이렇다. 현장에서 이거 분명히 이런거 있는데 지금 법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설득을 좀 하면, 어차피 소방청장이 정하는 훈령인지 고신지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동시에

효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아직 2~3주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개정돼서 하더라도 조례를 폐지해도 문제가 없죠. 훈령에 의해서 처리해버리면 되니까요.

(OOO 위원장)

그렇다면 소방청에서 담당하는데가 소방정책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지금 어디서 담당하고 있죠?

(간 사) 담당부서는 소방청 화재조사과입니다.

(OOO 위원장)

화재조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청에 지금 보면 시행령 있잖아요? 시행령을 갖다가 뭐 새로 개정한다든지 하는데는 소방정책과 아닙니까?

(간 사) 원래 그쪽인데요. 시행령 개정, 손실보상 관련된 사항은 화재조사과입니다.

(OOO 위원장)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화재조사과군요.

(OOO 위원)

그래서 사실조사를 하는거는 이 법령에서도 사실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피해액 조사 같은건. 법령 자체에 화재 피해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피해조사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소방기본법에 관한 화재피해조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 같고. 시행령에서 보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에서 사실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67페이지에 보니까.

(OOO 위원장) 예 67페이지에 있습니다.

(OOO 위원) 필요하면 위원장의 명과를 얻어서 사실조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조사를 해야 심의를 해도 보상여부나 이런 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 사실조사 없이는 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간 사) 그것은 이제 화재 뿐 아니고 인명구조 현장이라든가 또는 소화전 개방에 따른 피해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재난에, 모든 소방활동에 손실보상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더 사실조사 기록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건의는 했는데 들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OOO 위원) 개정법령 자체는 전제가 되는 활동이 소방활동 전반 같거든요? 화재진압만 한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소방활동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그 직무활동 관련되는 손실보상 건 다 걸려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도 보상청구가 가능한 거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상심의를 하라는 건데 심의전제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해놨으니까. 뭐라도 할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 사) 이게 사고발생 즉시 사실 조사를 해야지 지나면 훼손돼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피해신고가 접수 되는대로 가서 사실조사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OOO 위원) 근데 그런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간 사)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OOO 위원) 행정조사기본법이라는 법률이 별도로 있긴 한데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저촉 안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관 범위안에서는...

(OOO 위원)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OOO 위원) 금지규정만 없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 사) 18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안에다가 8조 소송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방활동에 대한 소송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심의조례를 제정할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조례를 일단 개정을 해서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OOO 위원) 법에 있는 사항인가요?

(간 사) 예. 법에 있습니다.

(OOO 위원) 소송지원을 구체화시키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간 사) 법률지원담당관실에서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OOO 위원) 상위법령에 있는 건 사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게 적잖게 있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OOO 위원장) 일단은 저희 논의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안, 이것이 과연 개정안에서는 제안 여부겠죠, 그쵸? 한 번 의원님들

의 의견을 차례대로 한 번 들어서 의견을 한 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인데 제가 지금 보면 차이점이 많은 것은, 다른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기록 유지부분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록 유지부분이 아마 시행령으로는 가장 큰 차이 같아요. 실질적으로 본부에서 업무하는데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 같은데. 이것을 이번에 새로 개외되는, 개최될 지방 의회에다가 서울시 의회에다가 제출할지 여부부터 의견을 짧게 들어보고, 이번에는 저기 제 왼쪽부터 부위원장님 한번 차례대로 한 번, 왜냐하면 지금 의견은 많이 나왔으니까, 전부 의견만 하시고 이거 갖다가 제가 지금 의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어떻게 할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OOO 부위원장) 일단은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상 자연재해법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사회재난법, 그 화재를 포함한 수재나 5대재난과 관련된 재난과 균형을 이루는 법을 만드는 것은 좀 그렇구요. 사실 이게 현장으로 내려오면 현장의 목소리가 위로 전달되고, 아시겠지만 법이 시행령이 6월 27일부로 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목소리나 일선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향후 1년 안에, 짧게는 6개월 내에 개정이나 보완책을 보완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하기보다 제안사항을 잘 정리해서 위로 전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OOO 위원) 전 지금까지 계속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거 그대로 기록 유지 및 사실조사는 뭐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뭐 금지되는 규정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기존의 일선에서 기록유지하고 화재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시도자치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도 적당해 보이고요. 지금 조례 자체를 폐지하느냐 이 부분은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지금 개정되는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혼선을 초래할 수는 있잖아요. 200만원 이하로 지금같이 해왔던 것들이 지금 이 법령에 의해서는 못하는데, 그 조례가 존치하고 있다면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신속하게 빨리 달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OOO 위원)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청장이 훈령이나 고시를 통해서 원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게 중요한데 여기서 어떤 폐지를, 직원들이, 그쪽에선 어차피 고민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손을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는건 빨리 그 쪽으로 옮기고, 빠른 시간내에 그 쪽에서 훈령이나 고시 형태로 신속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 조례해석이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OOO 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 사) 저는 제가 의원님들 고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OOO 위원) 시행령이나 시도 조례 목적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설마 시도조례가 시행령에 약간 어긋난다고 보다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행령이 완벽하게 정비가 될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해가지고, 과도기 같은데 그 과도기를 좀, 우리가 법 때문에 시민한테 해야될 것을 못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단지 그런 그런 일이 없도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부에서 잘 준비를 하셔서 소방청장하고 서울본부에서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나 법보다도 더 많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하고 같이 해서 잘 설득을 해서 -조례를 마련해서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조례나 시행 조례 시행규칙 법령에 위반되는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아닌 거는 여기서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어차피 저촉되는 부분은 효력이 없는 건 맞고, 다만 야까 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이드에 있는 200만원 그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가이드라인같은 부분은 시행령에 맞춰서 개정을 해서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OOO 위원) 잠깐 살펴봤는데 일단 피해, 화재피해 조사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조항이 있고요. 보상대상은 화재피해액 뿐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여러 가지 소방활동등을 포괄적으로 넣고 있는데 화재피해 말고 나머지 활동에 의한 피해 조사에 대한 조사권이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

아요. 그건 아마 소방기본법 등을 개정할 때 그 부분들이 사실 입법적으로 들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에 대한 것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 보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어야 되고 그건 화재피해 조사만 딱 법률에 있는데 그것은 또 법률이 개정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고, 앞으로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이제 개정 전에 조사활동을 하는 것은 야까 얘기했습니다만 행정조사기본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피해 조사 외에는 한 번씩 조사활동을 할 수 있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을 한 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 대강의 내용은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자기 소관임무와 범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권한이 있는데, 다만, 법령에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원칙이 되어있고, 예외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을 때에는 다시 조사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입은 사람들이 자기 피해조사 하겠다고 요청하면 자발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자발적인 협조를 근거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건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권이 인정되고요. 만약 자발적인 협조를 안해줄 경우에 강제조사권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직접적인 근거는 찾을 수가 없지만 야까 그 시행령에 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실관계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들어가지고 자발적인 협조가 어려울 경우엔 보완적인 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다. 현재는 그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 사) 지금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조사하고 기록유지가 있습니다. 구조구급 활동을 하다가 필요하면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OOO 위원) 그건 되죠.

(간 사) 만약에 붕괴건물이다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OOO 위원) 그러면 다 되네요.

(OOO 위원) 예.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조사 권한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간 사) 그래서 기본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들이 관련 근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다고 그렇게 넣어놨는데, 조례가 그것과 맞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OOO 위원) 조례가 없어도 그 법률들이, 법률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소방기관이 그걸 다 적용을 받잖아요? 각각의 활동을 할 때는, 그냥 조례가 없어도 그 법의 직접적인 근거로 조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례가 확인하는 것 밖에 없는 거죠.

(OOO 위원장) 지금 마지막으로 문교수님께서 논의가 길어지게 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아시겠습니까만 조례안을 갖다가 올리느냐 마느냐 여부부터가 좀, 원래는 여부가 아니라 내용을 검토하는게 맞았는데 여부부터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문교수님께서 의견을 한 번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나온 걸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OOO 위원) 아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대부분 드러서.. 조금 근데 시간을 두고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검토를 치밀하게 못해서, 조례안하고 다 만들어 주셨는데 내용에 대한 검토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OOO 위원장) 저도 내용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OOO 위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고. 기존 조례의 폐지 문제, 새로운 조례를 개정 내지 신설하느냐 하는 문제가 서울시 차원에서 걸리는데, 기존 법령과 소방청장의 훈령으로 다 커버가 되면 새로운 조례를 굳이 안 만들어도 되거나 기존 조례를 폐지해도 일단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기존 조례에서 일부 새 개정법령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나, 새 조례에서 추가 건을 새롭게 반영할 부분이 있었던 것이 조례의 어떤 폐기나 재개정을 안하게 되면서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조례를 못 정하더라도 소방청 훈령에다가 집어넣도록 노력해 보던가 아니면 아예 법령에다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요구해서 시도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당장 어려움이 생겨도 나중에 계속되는 일이라, **법령 체제는 확실하게 정비해 두는게 일하실 때, 중장기적으로 편하실 것** 같네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다시 한 번 보고 혹시 추가 계획이 있으면 연락을 따로 드리든가,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OOO 위원장) 지금 저희가 의회도 아니고, 실은 저희가 소방관계청도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조례를 올린다고 해서 이대로 통과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만 의회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의회에서 많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으로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법률과 시행령에 위법하게 되는 조례를 존치시키는 건 제가 보기엔 좀 그 기간 동안 만이라도, 내년에 국가직이 되든 훈령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뭔가 법령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또 법령 위반 상태가,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상태로 시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도 문교수님 말씀에도 상당히 많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방청 자체적으로 훈령이나 고시로 하는 게 제일 좋고 한데 우리 본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 본부, 특히나 제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올라가서 우리 서울시 소속 본부장님, 그리고 청장님까지 가서 우리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제 스스로도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제가 만약에 기다린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그 법령의 공백 혹은 위법 상태가 지속될 염려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례안을 가자는 의견이 세 분 정도고 부정적인 분이 한 분 그리고 중립적인 분이 두 분 정도, 문교수님을 중립이나 부정이나 저도 고민하긴 했는데, 이렇게 되고 제가 하나 더한다면 정한 게 간다는 의견으로 한다면 똑같이 일인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OOO 위원) 기존 조례 말씀이십니까?

(OOO 위원장) 아뇨. 아닙니다. 이 조례안이요. 개정안을 갖다가, 안건을 갖다가, 조례안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올리는 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상정하는 거를 갖다가, 일단은 지금 현재 위법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갖다가 상정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만, 이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주시고 아니면 이 번 논의가 어렵다고 한다면 위법 상태가 6월 27일 이후부터는 지금, 되는 겁니다. 저희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지금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심의권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지금 위법상태가 6월 27일 부터는 지속되는 걸 갖다가 저희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고라고 생각됩니다.

(OOO 위원) 조례안이 만약에 확정 시행 안되면 어떤 위법사항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OOO 위원장) 지금 현재 시행령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현행 조례랑.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OOO 위원) 현행 조례와 지금 개정안 말씀이십니까?

(OOO 위원장) 아닙니다.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OOO 위원) 물적손실보상조례 그거요?

(OOO 위원장) 네 19쪽에 현행.. 시행령하고 법률하고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공백을 어떻게 하느냐. 위법한 조례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 본부에 계신 위원들께서 이걸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지금 문교수님께서 특별히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도움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특별히 제가 지금 간사님들께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보면 25만원 내외, 되게 소액인데 굳이 신속한 구제를 위한다면 당연히 심의위원회 전에는 전결 조치, 사전 조치로써라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통계자료를 좀 마련해 주시고 그 마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부장님이라든지 소방청에다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좀 사전에 할 수 있는걸 마련해주시면 어떨겠습니까?

(간 사) 소방청에 냈습니다.

(OOO 위원장) 예 그렇죠. 그 부분. 다 드렸고 현재 지금 9건 있던 것도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간 사) 네.

(OOO 위원장) 그럼 그 건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도 볼 수 있게 메일로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간 사) 알겠습니다.

(OOO 위원장) 네 그 부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문 교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호 안건은 이대로 지금, 이걸 특별한 건은 아니고 법률과 시행령에 맞춰서 하는 것을 최선으로만 보면 제가 내용중에 다른 건 아니고 기록 유지 부분만 좀 우리 실무를 위한 부

분인데, 그래도 의견이 좀 많이 나뉘기도 했고 했는데 혹시라도 다시 한 번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지금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 혹시라도 이의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말씀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OO 위원) 기존에 현재에 있는 물적손실보상조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이제 국가 법령이나 이런걸 잘 조우하도록 필요한 경우에 이제 조례를, 하위법 이니까 정비하는 게 맞죠. 사실은. 새 법령이 만들어지거나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또 뭐 법령에 굳이 위반되지 않는 부분은 놔둬도 됩니다. 사실 이 조례 자체의 존폐를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놔둬도 되는데 저촉되는 부분들은 좀 삭제하다보니 알맹이가 없어서 이걸 굳이 둘 필요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폐지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저촉되는 법은 일부 삭제 혹은 개정된 이후에 남은 부분들이 법률에 저촉도 안되는데 필요도 하다. 유용하다 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뒀도 됩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조례 재정권 자체가 박탈이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실무에 좀 약해서 현재 물적손실보상조례를 만약에 둔다, 했을 때 기존에 이제 법령이 바뀔때로 인해서 생기는 상황하고 이게 현재 물적손실보상조례가 뭐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만약 둔다면, 그런 것들.....

(간 사) 지금까지는 법에 없던 것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법에 이제 생기다 보니까 시행령에서 생기다 보니까 이제 조례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일부 대상이라든지, 일부 대상이라전가하는 부분이 틀리거든요. 없는 부분이 좀 없는 건 있는데..

(OOO 위원) 예컨대 조례에서 대상을 확장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보다, 그런 건 가능하겠죠.

(간 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들이 다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OOO 위원) 법령 개정안에 보니까 소방 기관이 수행하는 공식적인 업무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걸 소방 업무 및 소방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위화재는 물론이고 긴급 재해 구난 구조 뭐 다 포함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문제는 이 법령에서 대응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관련 개별

법들이 뭐 더 구체적으로, 아까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간 사) 오히려 대상은 더 확대돼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OOO 위원) 네. 대상이 뭐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못하는 일을 포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 사) 만약에 개정안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대상 자체는 바뀌줘야 되는데 뭔가 기존에 있는 조례에 있는 사항을 법에 있는 사항으로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OOO 위원) 그러니까 바꿀 필요도 없죠. 어떻게 보면. 쓸 필요도 없는 거죠. 법령에서 소방활동 전부에 대해서 대상을 잡아놨기 때문에, 줄이는 건 어차피 안 되는거고 확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그런 것을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조례와 법령은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다 규정해 놓은걸 하위법에서 다시 똑같이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 지엽적으로 요구되는데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았으면 그 범위 안에서, 위임이 없었으면 조례에서 필요한 것을 하되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런 건 가능하겠죠.

(간 사)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맞춰가지고요. 다시 한 번 이번에 방문을 드리든지 해서 그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항을 전면 개정을 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항을 빼고, 시행령에 있던 사항을 빼고, 할 것인가가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OOO 위원) 제 생각에는 현재 조례중에 일정 부분은 법령, 개정 법령에 담긴 부분을 반복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서울시만 특별하게 하는 부분들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200만원 이하에 위원회 심의없이 한다. 이런 조례니까 일단 말이지요. 그런 건 지금 법령 개정안하고는 저촉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은 **법령이 개정될 때 소방청장 훈령이라도 집어넣던가 뭐라도 들어가면 조례를 폐지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일단 그게 일차적이고 그게 안 되면 일단은 법령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집행과정을 잡아야 될 거고 추후에 입법활동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OOO 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지금 그래서 일단 1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좀 있어서 간사님께서 지금 어떠겠다는 말씀이시죠? 간사님께서는? 새

롭게 지금 다시 확인하겠다는 뜻입니까?

(간 사) 지금 이 안은 조례안하고 시행규칙 안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있는 건 조례에까지 담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사항은 삭제하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사실조사 라든가 절차적인 부분이 은 개정을 해야 하지 안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OOO 위원) 그리고 나서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OOO 위원장) 다시 올린다는 말씀이신거죠?

(간 사) 시간이 있으니까요.

(OOO 위원장)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개의, 제 7회 지방의회가 8월이죠?

(간 사) 예.. 이번에 6월에 임시회가 한번 있는데, 이때는 의회 마무리하는 회가 될 것 같습니다.

(OOO 위원) 그게 법령에 있는걸 빼고 나면...거의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남는 게 거의 없겠죠.

(간 사) 그래서 저희가 존폐 문제를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OOO 위원) 제 의견이 중복되는 걸 빼고 나면, 서울시 조례에 예외적인게 두 세 개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조사 문제는 여기 조문에 있지만 없어도 그 법령에 의해서 조사권이 있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고 결국에 200만원 이하 그 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현장에서 중요하니까 그거만 청장을 설득해서 훈령에다 넣고, 그 정도 되면 이 조례를 둘 필요가 없죠.** 상위법에서 다 흡수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나뉘고 되는데 사실상 사문화 되는 거죠. 의미가 없죠. 법령으로 다 적용시키게 되는거고.

(간 사) 조례만들 때 하도 고생을 해서요.

(OOO 위원) 법령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상태를 조례만 할 수도 없잖아요.

(OOO 위원)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의신청.

(간 사) 이의신청하고 용어정리하고 이의신청하고 시장의 책무하고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OOO 위원) 200만원 이하 그거하고.

(OOO 위원장) 그게 제가, 좀 다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조례를 평가하다 보니까, 시도자치단체에 그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걸 보면 조례가 법령에 있는 걸 거의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00재단, 오늘도 0000재단인데, 곳곳에 가는 거에 다 조례가 되어있고, 모법이 있고 모법에 따른 시행령 내용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지금 아까 여기 실무위원들께서 충분히 어떤 것들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주시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는 다 끌고 간다는 것까지는 법령의 체계, 다득성이라고 그러죠? 체계가 좀 흩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구성이라든지 그 것까지 전체적으로, 내용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심의위원회 내용이 있어서는 오늘 지금 저도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나 이렇게 많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법령의 공백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실무위원들께서 지금 해소하는 시간이 좀, 빠른 시간 내에, 6월 27일에 시행된다고는 하는데 그 전에라도 된다고 하면 서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지방의회가 개의회가 다시 의결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금 다시 한 번 오늘 나왔던 의견들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서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문교수님께서 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의 중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의 의도를 알고 있다고, 오늘 우리 모두 공감했기 때문에 아마 이 지방의회에 개회될 때까지 조례로 어차피 손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좀 마무리를 하는데 좀 힘 써주십시오. 오늘 회의가 그러면 1호 안건은 보류하겠습니다. 2호 안건도 마찬가지로, 시행 규칙도 어차피 조례랑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2호 안건도 동일한 내용으로서 보류하는 것이고 자유토론 부분인데요. 자유토론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이 많긴 한데, 향후 운영방안도 지금까지 의견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60일동안 저희가 심의하게 되어 있고, 심의하는 동안에, 뭐 당연히 저도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한 위원회를 가게 되면 분기별로라든지, 뭐 한 달에

한 번, 진짜 자주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가면 거기서 기존에 있는 것들, 사실조사를 하시고 자료까지도 충분히 구비해 놓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결재를 하고 심의를 하는데 아마 60일이라는 기간 자체는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보통 90일 180일 보통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운영 방안에 있어서는 200만원의 제한 자체는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청 자체적으로 훈령이나 고시로 해가지고서,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법령의 범위를 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앞선 의견들 중에서 우리 간사님 하고 실무위원회 분들이 잘 좀 반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랜 시간, 2시간 정도, 1호 안건을 중심으로 많은 의견이 나왔고,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그럼 3호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간담을 하시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